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 명칭 변경 및 신규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독물질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신규 유독물질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에 지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고유번호 ‘97-1-5’ 등 25가지 품목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유번호 ‘2022-1-1085’ 등 11가지 품목의 화학물질을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화학물질의 명칭 변경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5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	디이소시아산이소포론 [Isophoronediiisocyanate; 4098-7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	디이소시아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80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96	발연황산 [Fuming sulfuric acid; 8014-95-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19	비소 [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2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63	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ite; 7758-1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82	알릴 알코올 [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98	염소산 염류 [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ate; 7775-09-9] 및 염소산 칼륨 [Potassium chlorate; 3811-04-9]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09	염화 황[Sulfur chloride; 10025-67-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2	오산화 인[Phosphorus pentoxide; 1314-5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8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40	백린[White phosphorus; 12185-1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68	크레졸[Cresol; 1319-77-3, <u>95-48-7, 108-39-4, 106-44-5</u>]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7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7790-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8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 acid; 79-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76	플루오로규산[Fluorosilicic acid; 16961-83-4]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나트륨, 칼륨 및 마그네슘 염류(16893-85-9, 16871-90-2, 16949-65-8)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410	히드라진 수화물[Hydrazine hyd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11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7803-49-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32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1,1'-Methylenebis [4-isocyanatocyclohexane]; 5124-3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0-1-611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26471-62-5, 584-84-9, 91-0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2-1-646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88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 3-Dichloro-1,3,5-triazine-2,4,6 (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신규 지정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22-1-1085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6	1,2-벤zisothiazol-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7	염소[Chlorine; 7782-5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8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9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0	피리치온 나트륨[Sodium pyri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sodium salt; 3811-7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1	포름산[Formic acid; 64-1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2	디카르보닐(η 5-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코발트[Dicarbonyl(η 5-2,4-cyclopentadien-1-yl)cobalt; 12078-2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3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운데칸 3,9-디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3670-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4	4-브로모- α,α,α -트리플루오로-m-톨루이딘[4-Bromo- α,α,α -trifluoro-m-toluidine; 393-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5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III. 부칙

1. 시행일

-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 경과조치

- 위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5년 1월 1일
-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유호성 팀장

T 070-4353-1522
E hsyou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